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김정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: 제2505호

다. 발의일자: 2025. 3. 27.

라. 회부일자: 2025. 4. 2.

2. 제 안 사 유

-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 수단에서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확장하는 '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·방전 서비스'를 실증하기로 하고,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.

이에 국회는 최근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해 (시행 2026.1.1.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·방전 가능 자동차와 설비를 개발·보급 확장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한바,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서울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시장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(안 제7조의6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¹⁾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.

현재 양방향 충·방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관련 기술 수준이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²⁾에서 조례에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임.

<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(산업통상자원부, 2024.)>

구 분	내 용
전기차를 활용한 개인 간 전력거래 허용	·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전력 거래 실증을 통해 제도 마련 추진(규제샌드박스 승인 2023.11월)
V2X ³⁾ 활용 촉진	·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력을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가 구매하고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V2X 제도 도입

1) 제8조의3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('25.1.21. 일부개정, '26.1.1. 시행)

2)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(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, '24.01.30)

3) Vehicle to everything: 전력의 양방향 충·방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을 활용하여 가정(V2H, Vehicle to Home), 건물(V2B, Vehicle-to-Building), 전력망(V2G, Vehicle to Grid)과 전력을 상호 거래하는 시스템